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9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이해식・박정현・이훈기

임호선 · 김주영 · 용혜인

김성회 · 신장식 · 강준혁

남인순 · 서영교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 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u> </u>
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	
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u>임용</u> 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지정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
	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
	<u>로 정한다.</u>